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11. 14.>

##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(제38조제1항관련)

| 작업명 | 사전조사 내용 | 작업계획서 내용 |
|---|---|---|
| 1. 타워크레인을 설치·조립·해체하는 작업 | - | 가.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<br>나. 설치·조립 및 해체순서<br>다. 작업도구·장비·가설설비(假設設備) 및 방호설비<br>라.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<br>마.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|
| 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| - | 가.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<br>나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|
| 3.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|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,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| 가.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<br>나.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<br>다.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|
| 4.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| - | 가. 밸브·콕 등의 조작(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)<br>나. 냉각장치·가열장치·교반장치(攪拌裝置) 및 압축장치의 조작<br>다.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<br>라. 안전밸브, 긴급차단장치,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<br>마. 덮개판·플랜지(flange)·밸브·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<br>바. 시료의 채취<br>사.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<br>아.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<br>자.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<br>차. 그 밖에 폭발·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|

| | | |
|---|---|---|
| 5.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| - | 가.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<br>나.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<br>다. 작업 범위, 작업책임자 임명, 전격·아크 섬광·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, 접근 한계거리,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<br>라.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(電源)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<br>마.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, 활선작업용 기구·장치 등의 준비·점검·착용·사용 등에 관한 사항<br>바. 점검·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,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<br>사.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(引繼)에 관한 사항<br>아.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<br>자.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·관리계획<br>차. 전기 도면,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|
| 6. 굴착작업 | 가. 형상·지질 및 지층의 상태<br>나. 균열·함수(含水)·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<br>다.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<br>라.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| 가. 굴착방법 및 순서, 토사등 반출 방법<br>나.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<br>다.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·보호대책<br>라.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<br>마.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<br>바.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<br>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 |
| 7. 터널굴착작업 | 보링(boring)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·출수(出水)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·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| 가. 굴착의 방법<br>나. 터널지보공 및 복공(覆工)의 시공방법과 용수(湧水)의 처리방법<br>다.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|
| 8. 교량작업 | - | 가. 작업 방법 및 순서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| 나. 부재(部材)의 낙하·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<br>다.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<br>라.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·사용·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<br>마.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, 작업방법<br>바. 작업지휘자 배치계획<br>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 |
| 9. 채석작업 | 지반의 붕괴·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·지질 및 지층의 상태 | 가.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<br>나.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<br>다. 굴착면 소단(小段: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)의 위치와 넓이<br>라.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<br>마. 발파방법<br>바. 암석의 분할방법<br>사. 암석의 가공장소<br>아. 사용하는 굴착기계·분할기계·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(이하 "굴착기계등"이라 한다)의 종류 및 성능<br>자.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<br>차. 표토 또는 용수(湧水)의 처리방법 |
| 10. 건물 등의 해체작업 | 해체건물 등의 구조, 주변 상황 등 | 가.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<br>나. 가설설비·방호설비·환기설비 및 살수·방화설비 등의 방법<br>다. 사업장 내 연락방법<br>라. 해체물의 처분계획<br>마.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서<br>바.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<br>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 |
| 11. 중량물의 취급 작업 | - | 가.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br>나.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br>다.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br>라.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| 마.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|
| 12.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·점검 작업<br>13. 입환작업(入換作業) | - | 가. 적절한 작업 인원<br>나. 작업량<br>다. 작업순서<br>라.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|